임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4. 30.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럭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 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명칭은 임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임원의 합리적인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경기단체 임원 임기의 중임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약간인
- 3. 위원 약간인(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본 협회의 임직원 중에 1인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회는 체육계·법조계·학계·경제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구성 되어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골고루 발언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임원의 심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임원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의결하고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협조 요구) 가맹단체 및 사무국은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회의의 참석 등의 협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

제14조(심의대상)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맹단체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이하 "경기단체 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심의실시) ① 가맹단체는 임원 후보자가 1회 이상 당해 단체의 임원직을 중임한 경우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장의 경우는임원선출 총회 후보자 등록 전에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가맹단체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가맹단체 임원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될 때 당해 임기의 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

-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하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의 기준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위원회는 심의기준표를 참작하여 그 결과를 심의 · 의결한다.

제18조(재심요구) ① 제17조의 의결에 따라 중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요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단체가 제출한 재심 요구 취지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 15. 4.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